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한국핀테크지원센터 Fintech Center Korea
	보도	2019.3.11.(월) 조간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(02-2100-2530)	담 당 자	최 민 혁 사무관(02-2100-2534) 권 오 혁 주무관(02-2100-2758)
	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무국장 황 인 덕(070-4481-9002)		김 세 진 팀 장(070-8873-9005) 성 백 규 과 장(070-8872-9004)

제 목 : 핀테크기업의 혁신적 도전에 예산지원으로 날개를 달아드립니다.

-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 접수 (3.11~3.25) -

- 금융위·핀테크지원센터는 **금융규제 테스트베드**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**테스트비용 지원 신청 접수 개시**
 - * 혁신금융서비스,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
 - **총 40억원의 범위 내,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%(나머지 자비부담)를 1억원 한도내 지원**
 - **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,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, 부정수급 등 모니터링도 철저히 할 계획**

1 지원 개요

□ 핀테크 지원을 위한 '19년도 신규예산(79억원) 확정('18.12.7) 후 보조사업자로 핀테크지원센터를 선정('19.1.14)하여 비용 지원(40억원) 개시

< '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>

세부사업	금액(억원)	주요항목
①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	48	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.5억원
②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	19	맞춤형 교육 4.2억원 해외진출컨설팅 6.8억원
③국제협력 강화·국제동향 연구	2	국제동향연구 0.9억원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
④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	9	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8.2억원
합 계	79	

* : 핀테크 기업이 신청가능한 사업

◆ **예산지원 기본원칙** ※ FIN (Fair, Innovative, Necessary)

- ① (Fair, **공정**) 핀테크 기업에게 **공정한** 기회 제공
 -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 핀테크 기업을 지원
- ② (Innovative, **혁신**) **혁신적인** 핀테크 서비스에 우선 지원
 - 혁신성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원 차등화
- ③ (Necessary, **필요**) 실제 지원이 필요한 **중소업체 중심** 지원
 - 대기업, 금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□ (기대효과)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**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금융혁신 촉진**

-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**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기업**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

2 주요 내용

□ (지원대상) 금융규제 테스트베드* 참여 핀테크기업

* 혁신금융서비스,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

◆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**규모가 영세***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과감한 **테스트가 어려움****

* 초기 핀테크기업은 직원수가 3-4명에 불과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

** (사례) A핀테크기업은 시범운영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,000만원, 인건비 5,000만원, 기타비용 2,000만원 등 1억원 가량의 테스트비용이 소요

-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, **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선별 지원**

- 지원대상은 **중소기업에 한정되며 금융회사는 제외**

- **동일 회계연도 내**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**중복지원 불가**

* (예시1) '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(2차례 이상)은 불가하나, '19년도 지원 후 '20년도 지원은 가능

* (예시2) '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'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 (또는 지정대리인)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

-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경우 테스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완료한 경우만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

□ (지원규모) 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%(나머지 자비부담)를 1억원 한도내 지원

- 연간 최대 100개 기업에 총 40억원 지원 예정*이며, 4월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등 비용지원 수요를 보아가며 조정 가능

<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규모-연간 >

테스트베드 유형	지원 총액	지원 규모
① 혁신금융서비스	20억원	평균 0.6억원, 최대 50개 내외
② 지정대리인	10억원	평균 0.4억원, 최대 20개 내외
③ 위탁테스트	10억원	평균 0.3억원, 최대 30개 내외
합 계	40억원	최대 100개 기업 내외

* 테스트베드 활성화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기업당 평균 지원규모를 0.3~0.6억원으로 결정

* 지원 금액, 기업 수는 예산 상황, 자금수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이번 제1차 지원의 경우, 신청 공고일 현재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기업 수, 시범영업 수준·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개 기업, 총 7억원을 지원할 계획

<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규모-제1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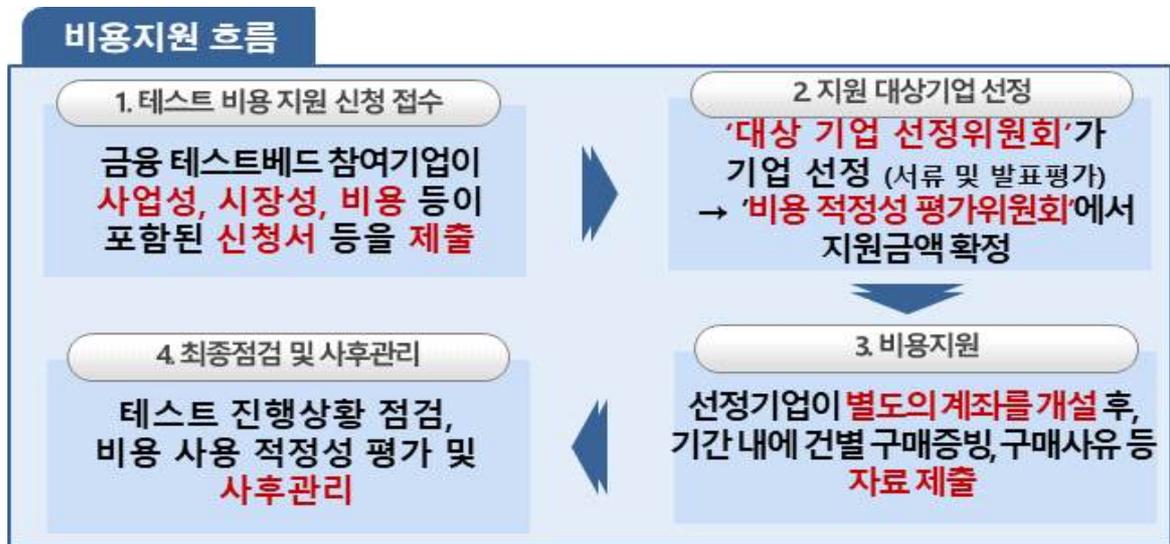
테스트베드 유형	지원 금액	지원 기업수
① 혁신금융서비스*	-	-
② 지정대리인	평균 0.4억원,	최대 10개 내외
③ 위탁테스트	평균 0.3억원,	최대 10개 내외

□ (지원범위) 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*

*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
- (접수기간) '19.3.11(월) ~ 3.25(월)
- (접수방법)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fintechcenter.or.kr)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
- (평가절차)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 →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
 -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한 후,
 -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선정된 회사에 대한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



□ 유의사항

- 동일 회계연도 내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(테스트베드 유형 불문)
- 지원범위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* 또는 인력**에 한정되며, 이외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*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H/W, S/W 구매(또는 임대) 비용
 - ** 테스트베드 운영 인력의 인건비
-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될 수 있음

4 사후관리

1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

-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, 최종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 위원회 운영

2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

-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*에 대하여 상시 감사
 - *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물적 설비는 해당 기업, 핀테크지원센터가 각자 장부에 별도 등록·관리하고, 원칙적으로 5년간 매각 불가(장비 임대 시 해당사항 없음)
-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, 핀테크지원센터는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처 대조작업 등 관리 감독

3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

- 테스트 종료 후 ①테스트 성공여부(정량·정성), ②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
 - 특히,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제재(환수, 채권추심, 고발 등) 추진

5 향후 일정

-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,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 가능

<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일정(안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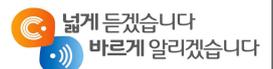
월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내용												
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접수												
지원대상 기업 선정												
비용지원												
사후관리												

*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 중 지정될 예정으로, 5월부터 비용지원 신청 가능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1. 혁신금융서비스

※ 핀테크기업/금융회사 → 금융위 승인 → 자체 영업

□ (개요)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시,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등에 특례 부여(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근거)

□ **진행사항**

○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('19.4.1) 이전인 '19.1월중 신청을 미리 받아 예비심사 진행 → 4월중 지정 추진

* 사전신청된 105건 중 40여건을 우선심사 후보로 선정하여 이 중 20여건을 우선 심사 대상으로 확정 예정

2. 지정대리인

※ 핀테크기업 → 금융위 승인 → 금융회사 본질적 업무 위탁

□ (개요)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(지정대리인)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(예금 수입, 대출 심사, 보험 인수 심사 등)를 위탁하고,

○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협력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(테스트)하는 제도

* (지정대리인 근거)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(고시) → 금융혁신지원 특별법

□ **진행사항**

○ (1차) 12건 접수('18.5~6) → 9건 지정(9.14)*

* 2건 지정없이도 수행가능, 1건 철회

○ (2차) 15건 접수('18.10~11) → 7건 지정(Fast Track 2, '19.1.18 / 일반 5, 3.4)*

* 4건 철회, 4건 미지정

3. 위탁테스트

※ 핀테크기업 → 금융회사에 업무위탁 (금융위 승인 ×)

□ (개요)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기존 금융회사에게 위탁하여 테스트 실시*

* (위탁테스트 근거) 법적 근거 없었으나,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마련되는 고시(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)에 관련 근거규정 신설

□ **진행사항**

○ (1차) 17건 접수('17.10~'17.11) → 7건 테스트 완료, 1건 진행 중

○ (2차) 15건 접수('18.10.15~11.13) → 7건 테스트 진행 중